

신평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1997. 7. 1.
개정 2013. 3. 1.
개정 2020. 4. 1.
개정 2021. 2. 5.
개정 2022.10.12.
개정 2023. 4.12.
개정 2024.12.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신평초등학교 학교규칙(아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신평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는 전북 임실군 신평면 가덕로 683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와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제 1학기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2. 국경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방학
6. 개교기념일 : 5월 1일
7. 재량휴업일

② 학교장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휴가 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실시한다.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 ⑤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와 학생 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교육감이 배정하는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학생 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배정하는 인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외로 관리할 수 있다.

- ① 재학 중 부모가 개인 및 기타 사정으로 국외거주로 전출하는 자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

제4장 교과와 교육과정.수업일수와 과정수료의 인정과 졸업

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하며 천재지변이나 국가 기관에서 인정한 질병에 감염되어 결석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특히 감염 병과 관련해서 해당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수업의 운영)

- ① 수업이 시작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교무회의에서 결정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 ④ 학교장은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 감염병과 연관된 원격 수업 등은 해당 지침에 따른다.

제12조(평가)

학생의 학업 성취를 측정하기 위한 교육 평가는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행동 용어와 3단계 평정 척도에 의하여 기록한다. 평가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과 행동발달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3조(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전염병 등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
 -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교외체험학습)

- ①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교외체험 학습은 테마식 현장학습, 도·농간 교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효도·방문 체험학습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체험학습 기간은 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개인 교환학습 출석인정 기간은 연 30일 이내, 단체교환학습 출석인정 기간은 연 2주 이내로 한다.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③ 체험 학습은 참여·봉사 활동, 답사·탐구활동, 견학·관람활동, 실습·창작활동 등으로 나누어 활동한다.
- ④ 기타 교외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해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6조(입학자격)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로 한다.

제17조(입학시기)

- ① 본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본교의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편입학 및 유예)

- ①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 한다.
-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연령이 만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9조(전입학)

-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읍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 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기타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

제6장 조기입학.진급과 조기졸업

제21조(목적)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1에 따라 학교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제22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 ②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능력에 관한 사항
- ③ 국내외 경시 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제24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8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2항, 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 ③ 학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6조 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4조 3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제25조 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교감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4조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8조(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에게 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감과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결과 조기수료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7장 학생 포상과 학생 징계

제29조(학생생활인권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30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근면성이 뛰어난 학생,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여러 분야에서 특기를 발휘하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훈육·훈계방법)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제32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33조(학생 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훈계
 - 학교 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 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1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신평생활규정에 따른다.

제8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34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 ③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5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 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단, 평가 기간 제외)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5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 (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9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36조(학생자치활동)

- ①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다모임회를 두고 학교장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② 다모임회의 운영은 다모임회칙에 의한다.
- ③ 학생 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0장 학교 운영위원회

제37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학부모 및 지역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신평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8조 (구성 및 위원정수)

위원회는 학부모위원2, 교원위원1, 지역사회위원 1명 등 5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9조 (위원의 선출방법)

위원의 선출은 신평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개시는 매년 4월 1일부터 하며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 (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은 정당원이 아닌 자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2조 (위원의 임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위원의 권한)

- ①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②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1장 학교 발전기금

제44조(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학교 발전기금은 초.중등 교육법 제33조의 규정 및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기금 조성 및 관리를 한다.

제12장 인사자문 위원회

제45조(인사자문위원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본교 실정에 맞는 원활한 인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제46조(직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교내 직원 표창의 공적(실적)심의
2. 상부나 타 기관의 표창 대상자 추천 선정을 위한 의견
3. 해외연수 및 각종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의견
4. 부장교사 임용, 교과 전담교사 배정에 대한 의견
5. 학급담임 및 업무 분장 배정 원칙
6. 학칙 심의
7. 기타 교내 인사에 대하여 학교장이 요구하는 건

제47조 (구성) 위원회는 교감, 교무, 연구 및 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제48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학년말(2월말)까지로 한다. 전보나 퇴직으로 인한 결원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보선을 한다.

제13장 교권보호

제49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신평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평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교권보호활동지원)

본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제14장 학칙개정 절차

제50조(학교규칙개정절차)

- ① 학칙은 교직원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③ (개정 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④ (개정 시행일) 본 학칙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